

markdown

이 조례가 채택된 시점에 존재하는 주거용 건물이 해당 용도를 제공하기 위해 같은 블록 또는 지구화 블록에 주차장이 제공될 수 없는 크기의 블록을 점유하는 경우, 해당 주거용 건물 또는 건물들로부터 300피트(300 feet) 이내의 거리에 오프스트리트 주차장이 지구화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오프스트리트 주차장은 서비스되는 용도와 같은 지구에 위치해야 하며, 본 조례의 제11.0조에 따라 건설되어야 합니다.

3. 주거(R) 지구에서 허용되는 "조건부 용도"에 필요한 오프스트리트 주차장은 보드 오브 어드처스먼트의 승인을 받은 경우, 서비스되는 건물 또는 용도가 위치한 블록 또는 지구화 블록 외의 다른 블록 또는 지구화 블록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차장은 서비스되는 용도 또는 건물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합리적인 거리 내에 위치해야 하며, 해당 용도를 위해 제한 없이 항상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D. 공동 주차 규정: 공동 오프스트리트 주차 시설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러한 주차 시설은 각각 개별적으로 요구되는 주차 시설의 합계보다 적어도 같아야 합니다. 다만, 공유 주차 규정 제11.0조, E항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E. 공유 주차 규정: 어떤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거나, 공유 주차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 및 적절한 유지 보수를 보장하는 만족스러운 보증서가 제출된 경우, 제출된 개발 계획이 주거 용도를 제외한 두 개(2) 이상의 토지 용도를 포함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 주차 공간 수는 각 토지 용도에 대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차 공간의 최소 수를 해당 시간대별 공유 주차 크레딧 테이블에서 표시된 적절한 백분율로 곱하여 계산됩니다. 필요한 주차 공간 수는 각 열의 결과를 합산하여 결정되며, 가장 많은 주차 공간 수를 생성하는 열의 총합이 최소 주차 공간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Note that the text in Korean is already in markdown format and does not need to be converted further.

The table is not present in the provided text, so no HTML table is generated here.)